



제422회국회(임시회)
제 1 차 국 방 위 원 회

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“특별채용” 용어를 “경력경쟁채용”으로 변경〉

■ 김성원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6582호)

2025. 2.

국 방 위 원 회

수석전문위원 오명호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----------------	---
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II . 검토의견	2
------------------	---

※ 참고자료

현행법과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비교	6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I. 제안경위

1. 발 의 자 : 김성원의원 등 10인
2. 발의연월일 : 2024. 12. 17.
3. 회부연월일 : 2024. 12. 18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(법률 제10699호, 2011. 5. 23. 공포)에 따라 “특별채용”의 명칭이 “경력경쟁채용”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 정비가 필요함.

「경찰공무원법」 등 타법 역시 특별채용 명칭이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해당 법률의 명칭 역시 경력경쟁채용으로 변경하고자 함(안 제7조제6항 등).

Ⅲ. 검토의견

- 개정안은 「국가공무원법」 개정(법률 제10699호, 2011. 5. 23 공포)에 따른 조문용어 정비를 위해 “특별채용”의 명칭을 “경력경쟁채용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7조제6항 등).

현행	개정안
제7조(기관장의 채용) ① ~ ⑤ (생략)	제7조(기관장의 채용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<u>특별채용</u> 할 수 있다. 다만,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⑥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력경쟁채용</u> 할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0조(인사교류) ① (생략)	제20조(인사교류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<u>특별채용</u> 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	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경력경쟁채용</u> 되----- ----- <u>기</u> ----- -----

특별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.

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.

④ (생략)

제24조(특별채용의 특례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과 「군무원인사법」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.

---경력경쟁채용시험을-----

---. -----

-----.

③ -----

-----경력경쟁채용된

경력경쟁채용되는-----

-----.

경력경쟁채용된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24조(경력경쟁채용의 특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경력경쟁채용과

-----경

력경쟁채용은-----

-----.

- 현행법 제7조제6항, 제20조제2항 및 제3항, 제24조제2항에서는 “특별채용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, 「국가공무원법」(법률 제10699호, 2011. 5. 23 공포)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용어가 “경력 경쟁채용”으로 변경된 바 있음. 따라서 개정안은 이러한 법률 간 용어의 통일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.
- 현행 「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채용 제도는 「국가공무원법」,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, 「군무원인사법」의 경력경쟁채용 제도와 본질적으로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음. 그러나 본 법률만 아직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“특별채용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.
- 따라서 「국가공무원법」(법률 제10699호, 2011. 5. 23. 공포),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(법률 제10699호, 2011. 5. 23. 공포), 「군무원인사법」(법률 제 13501호, 2015. 9. 1. 공포) 등이 모두 개정된 바 현행법에서도 “특별채용”이라는 명칭을 “경력경쟁채용”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.
- 다만, 개정안 시행과 관련하여 기 진행 중인 시험과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부칙에 아래와 같은 경과조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. 참고로 「군무원인사법」 등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개정 시 다음과 같은 경과조치를 부칙으로 규정한 바 있음.

부칙 제2조(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)

이 법 시행 당시 시험실시사항이 공고되었거나 진행 중인 시험은 제7조제6항, 제20조제2항 및 제3항, 제2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- 국방부는 「국가공무원법」을 포함한 다른 법률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해당 법률 또한 명칭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310

※ 참고자료 : 현행법과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
관한 법률 비교

현행	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
제7조(기관장의 채용) ⑥ 군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관장으로 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채용기간이 끝나거나 채용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퇴직시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우선하여 <u>특별채용</u>할 수 있다. 다만, 신체·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제7조(기관장의 임용) ⑥ 경력직공무원이 기관장으로 임용되기 위하여 퇴직한 경우에 기관장 근무기간이 만료되거나 제8조의2제3항제1호에 따라 면직된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급(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시 재직한 직위와 곤란성 및 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)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우선하여 <u>경력경쟁채용</u>할 수 있다.
제20조(인사교류)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군무원이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<u>특별채용</u>되기 위하여는 제1항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<u>특별채용시험</u>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부대 및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	제20조(기관 간 인사교류) ② 제19조에 따라 채용된 소속 책임운영기관 소속 경력직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<u>경력경쟁채용</u>되려면 제1항의 경우 및 해당 인사 관계 법령(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 직위에 적용되는 법령을 말한다)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외에는 해당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<u>경력경쟁</u>

으로 정한다.

③ 다른 법률에 따라 일반군무원으로 임용된 후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된 자가 다시 다른 부대 또는 기관의 일반군무원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되거나 특별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.

제24조(특별채용의 특례)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채용과 「군무원 인사법」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특별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.

채용시험을 거쳐야 한다.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인사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개별적으로 정한다.

③ 다른 법률에 따라 경력직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사람이 다시 다른 행정기관의 경력직공무원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소속책임운영기관으로 전보 또는 경력경쟁채용된 후 승진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제2항 후단만 적용한다.

제24조(경력경쟁채용에 대한 특례)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소속책임운영기관 소속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그 소속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사람만을 대상으로 한다.